2021년도 제25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 1. 일 자 2021년 12월 23일(목)
-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 3.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총재)

임지원 위원

조 윤 제 위 원

서 영 경 위 원

주 상 영 위 원

이 승 헌 위 원(부총재)

박 기 영 위 원

- 4. 결석위원 없 음
- 5. 참 여 자 강 승 준 감사 박 종 석 부총재보

이 상 형 부총재보 이 정 욱 금융안정국장

홍 경 식 통화정책국장 김 인 구 금융시장국장

박 영 출 공보관 한 승 철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최 문 성 의사팀장

- 6. 회의경과
- 가. 의결안건

<의안 제38호 - 금융안정보고서(2021년 12월)(안)>

-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96조 제1항에 의거 금융안정보고서(2021년 12월)(안)을 의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 부서는 위원협의회 등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위원 간 사전 협의 등을 통해 금번 보고서에서는 본문의 경우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리스크 요인을 신용·자산시장, 금융기관 등의 부문별로 나누어 심 층적으로 살펴보되 개황 부분은 이전과 달리 간결하게 본문 내용을 축약하면서도 향후 리스크 등이 명료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개편하기로 하였음. 또한 현안 분석과 참고 박스에서는 금융불균형 상황, 신용위험 증대 가능성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아울러 국내외 인플레이션 압력,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금융·경제 여건 변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데 각별히 중점을 두기로 하였음.

다음으로 12월 9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여러 위원들은 금번 보고서가 가계부채를 포함한 금융불균형 상황 평가, 국내 외 인플레이션 및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영향 등 금융안정과 관련하여 살펴 보아야 할 여러 이슈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균형있게 다루고 있다고 평가하였으 며, 일부 위원들은 그 내용들을 포함한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 도록 개황 부분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금융안정 상황 및 복원력 평가와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은행과 비은행금융기 관 간 가계대출 증가율 추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배경, 고신용 차주 비중이 상승한 원인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른 위원은 취약차주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나 고위험 가구는 늘어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가계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두 지표의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또 다른 위원은 코로나19 이후 기업부문에 대해 많은 유동성을 공급하였는데 어느 정도가 투자에 활용되었는지, 중장기적으로 어떤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 인지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어서 동 위원은 아직까지는 기업 및 자영업자의 부실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나 향후 코로나19 재확산,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부실위험이 커질 수 있다 는 점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정부가 거시건전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공적보증 확대가 주택금융 익스포저(exposure) 확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가계 M2 증가율과 가계의 자산투자와의 관계를 과거 사례 등을 통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다른 일부 위원은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시나리오 설정 근거, 모형의 유의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추가해 줄 것을 제안하였음.

주요 현안 분석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최근 국내외 금융불균형 상황 평가 및 시사점」에서 금년 3/4분기 들어 금융취약성지수가 하락한 원인을 자세하게 기 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어서 동 위원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소득 분위별 대출격차 확대에 따라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내용의 근거를 소득 분위별 대출의 용도 차이 등을 통해 보다 자세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외국인 국내증권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통화정책 정상화의 의미, 과거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증권자금 유출입 사례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최근 금융부문의 상호연계성 추이 및 리스크 점검」에 대하여 기업부문에 대한 자금중개기능이 약화된 데에는 기업업황 부진 이외에 풍부한 유동성을 보유한 기업의 자금수요 둔화에 따른 영향도 있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관련 부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수정·보완한 후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 금융안정보고서(2021년 12월)(안)(생략)

<의안 제39호 - 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안)>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6조에 의거 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을 수립·공표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 부서에서는 12월 13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통화신용정책 운영여건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화됨에 따라 방역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이를 해당 부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과 관련하여 다수 위원들은 내년에도 경제상황 개선에 맞추어 완화정도를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일부 위원은 통화정책 운영체계 점검 및 개선에 대해서 그 필요성과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관련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다수 위원들은 CBDC 도입 기반의 강화에 대해서는 관련 조사·연구 및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는 한편, 도입이 확정된 것으로 비치지 않도록 관련 서술에 다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음.

관련 부서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고 설명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법」제6조에 의거 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붙임과 같이 수립·공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 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안)(생략)

<의안 제41호 - 회사채·CP 매입기구(SPV)의 자본감소에 대한 동의(안)><의안 제42호 -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제2회 대출금 재대출(만기 연장) 실시(안)>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1조 제2항, 제28조 제9호 및 제80조에 의거 회사채·CP 매입기구(SPV)의 회사채·CP 매입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SPV에 대한 한국산업은행의 출자금 확정 및 이에 따른 SPV의 자본감소에 동의하고자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아울러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제2회 대출금의 만기도래시 대출금 잔액을 재대출(만기연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 부서에서는 본 안건들에 대해 12월 2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우선 모든 위원들은 지난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한시적 비상조치로 정부 등과 함께 SPV를 설립하고「한은법」제80조에 따라 동 기구에 유동성을 지원하였는데, 최근 회사채·CP 시장이 SPV 설립 당시에 비해 개선되었고, 국내외 실물경기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위기대응 조치의 정상화관점에서 SPV 운영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는 SPV를 통한 회사채·CP 시장 지원은 한시적인 긴급조치이고, 지원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건전한 시장기능 작동을 위해 SPV의 매입기한은 예정대로 종료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하였음. 아울러 SPV의 매입 종료 이후 운영과 관련하여, 향후 시장 변동성 확대 위험 가능성에 대비하여 시장상황 악화시 SPV가 매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비상기구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제안에 대해 설명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SPV가 비상기구화될 경우 상설기구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는 SPV가 비상기구화되더라도 회사채·CP 매입기간 종료를 전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SPV는 보유 회사채 최종 만기시점(2024년말)에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그리고 SPV가 회사채·CP 매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재원 조성이 필수적인데 당행은 「한은법」제80조에 따라 대출 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당행 금통위의 의사가 배제된 SPV의 상설화 우려는 크지 않다고 덧붙였음.

모든 위원들은 SPV의 회사채·CP 매입기한은 예정대로 금년말에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SPV의 비상기구화는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정부 안을 수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는 SPV의 비상기구화 재원과 관련하여 선지급된 출자금중 일부를 유보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동 방안을 위해 SPV의 자본 감소 절차 동의와 기존 대출계약서의 조기상환의무 관련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음.

이에 대해 위원들은 SPV 설립 당시 재원 조성에 관한 관계기관의 합의 내용을 고려할 때 출자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한편 모든 위원들은 한국은행이 올해 1월 SPV에 대해 실시한 제2회 대출금의 만기가 도래할 예정인 바, SPV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출금 잔액의 만기를 연장하여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는 SPV가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이외로부터는 차입이불가능해 한국은행 대출금 회수시 회사채·CP의 대규모 매각으로 동 증권 발행기업의 자금조달 애로와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2회 대출금의 만기를 2023년 1월까지 연장하여 SPV에 재대출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하였음.

모든 위원들은 SPV의 매입기한은 종료되었지만 SPV 청산시까지 비상기구화되어 존속하는 만큼 향후 금융·경제 여건 변화 및 회사채·CP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회사채·CP 매입기구(SPV)의 자본감소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동의하고, 동매입기구에 대한 제2회 대출금 재대출(만기 연장)을 붙임과 같이 실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

회사채·CP 매입기구(SPV)의 자본감소에 대한 동의(안)(생략)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제2회 대출금 재대출(만기 연장) 실시(안) (생략)